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 안	3-374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3

발 의 자 : 이강준 의원외3인

1. 주 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010년 동두천시의 15만 인구를 대비하여 상패동 18번지의 공원묘지를 이전하여 공공기관을 신축하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를 묻는등 총 14건을 묻기위하여 동두천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